## 충청북도중 -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7월 2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:2009년 7월 8일
다. 상 정 및 의 결일자
○ 2009. 7. 15 제282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•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ㅍ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전재원 교육국장)

## 가. 제안이유

○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,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•보완 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

○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"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" 로함(안 제2조제 5 호)
○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

III．검토보고 요지
（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）
$\square$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○ 조례 제명 변경과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
비점을 수정•보완하는 한편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，

○ 안 제 2 조제 5 호의 특별장학생 승계자 요건을＂우수하고 품행이
타의모범이 되는 자＂로 개정하는 바，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
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」의＂교과학습발달사항＂표기 방법이 교과별－과목별 석차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，

O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－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IV．질의 및 답변요지 ：＂생략＂

V．토론요지 ：＂생략＂
VI．심사결과 ：원안가결
VII．소수의견요지 ：없음
VIII．기타 필요한 사항 ：없음

## IX．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중•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중•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

충청북도중•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

제명＂충청북도중•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＂를＂충청북도 중•고등학 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＂로 한다．

제1조 중＂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＂를＂「교육기본법」제 28조제1항에 따라＂로 한다．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＂다음 각호의 1 ＂를＂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＂로， 같은 조 제5중＂ $5 / 100$ 이내인 자로서 행동발달 상황이＂나＂이상인 자＂를＂우 수하고 품행이 타의모범이 되는 자＂로 한다．

제4조 중＂서식에 의한＂을＂서식에 따른＂으로 한다．

제 5 조부터 제 7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．
제5조（장학금 지급）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，수업료，학교운영지원비 를 면제한다．

제 6 조（지급기간 등）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．

제7조（지급중지）（1）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．
1．퇴학하거나 1 학기 이상 휴학할 때
2．「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3．연간 출석율이 90 퍼센트에 미달할 때
4．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
5．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(2)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"승계 선정할 수 있다. 장학생추천서를 [별지]와"를 "승계할 학생 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서는 별지와"로 한다.

제9조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, "시행에 관하여"를 "시행에"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-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:---: | :---: |
| 충청북도중 -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| $\begin{gathered} \text { 충청북도V중•고등학교 } V \text { 특별장학 } \\ \text { 생에 } \vee \text { 관한 } \vee \text { 조례 } \end{gathered}$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 |
|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| 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내 중 |
| 중 •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중 특출 | 고등학교의 춰학대상자 중 특출한 |
| 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 |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|
| 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|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 |
|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| 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 |
|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| 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한다. <br> 제2조(특별장학생의 요건) 이 조레에 | 제2조(특별장학생의 요건) 이 조레에 |
|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 ¢ |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 ¢ㅣ |
| 하 "특별장학생"이라 한다)는 중 | 하 "특별장학생"이라 한다)는 중 |
| 고등학교의 취학 대상자 중 학비 부 | 고등학교의 취학 대상자 중 학비 부 |
| 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 | 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 |
| 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| 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|
| 각호 의 1에 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|
| 1.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| 한 |
| 극히 우수한 자 숭학교 제 학년 학 | 1.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|
| 생에 한한다.) | 극히 우수한 자 (숭학교 제 학년 학 |
| 2.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| 생에 한한다.) |
|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 | 2. 중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 또는 |
| 수한 자 | 고등학교 선발 고사 성적이 극히 우 |
| (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.) | 수하 |
| 3. 자연과학, 예능, 체육 등에 특수 | (고등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.) |
| 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 3. 자연과학, 예능, 체육 등에 특수 |
| 4.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 | 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| 정되는 자 | 4.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 |
| 5. 승계자는 학업성적이 5/100이내 | 정되는 자 |

## 인 자로서 행동발달 상황이 "나" 이상인 자

제 4 조(특별장학생의 선정) 중 고등 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 한 특별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교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 제5조(장학금 지급) (1)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 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, 기타 일 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.
(2)

제6조(지급기간등) (1특별장학생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이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 다.
(2)

제7조(지급중지) (1)특별장학생이 다 음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 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
2. 초•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3. 연간 출석율이 $90 \%$ 에 미달할 때
4. 다른 장학금을 받게된 때
5.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된 때
(2)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 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6. 승계자는 학업성적이 오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
제 4 조(특별장학생의 선정) 중 •고등 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따 른 특별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교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 제5조(장학금 지급) 특별장학생에 대 하여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 지원비를 면제한다.

## <삭 제>

제6조(지급기간 등) 특별장학생은 제7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 해당 하는 사유가 없는 한 헤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.

## <삭 제>

제7조(지급중지) (1) V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할 때
2.「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 조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
2. 연간 출석율이 90펴센트에 미달 할 때
3.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
4. 그 밖이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(2) $\vee$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

|  |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|
| :---: | :---: |
| 제8조(탈락자의 승계) 학교장은 장학 | 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|
| 생 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|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|
| 승계 선정할 수 있다.장학생추천 | 제8조(탈락자의 승계) 학교장은 장학 |
| 서를 [별지]와 같이 한다 | 생 중 탈락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|
| 제9조(시행규칙) 특별장학생의 관리 | 승계할 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, |
| 작금의 지급, 기타 이 조례의 시 | 추천서는 별지와 같이 한다. |
| 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 | 제9조(시행규칙) 특별장학생의 관리 |
| 칙으로 정한다. | 장학금의 지급, 그 밖에 이 조례의 |
|  |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 |
|  | 로 정한다. |

## 관계법렁 발췌

$\square$ 교육기본법[법률 제8915호, 2008. 3.21, 일부개정]
제28조 (장학제도 등) (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
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(장학제도)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•실시하여야 한 다.
(2)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
2.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
(3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,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